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66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2205767)	2024. 11. 21.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7. 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18.)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김영배의원 (2210735)	2025. 6. 11.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18.)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윤건영의원 (2211634)	2025. 7. 2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5.)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1. 18.)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윤준병의원 (2211866)	2025. 7. 3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5.)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9. 3.)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1. 18.)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11. 26.)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 나. 현행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현행 제11조제4호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개정, 제11조제4호 삭제).
- 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 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 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 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 판소장 공관</u>	3. <u>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 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 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 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u> <u>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 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 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u>

4. <u>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u> <u>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u> <u>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u> <u>하지 아니하다.</u> 가. <u>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u> <u>지 아니하는 경우</u> 나. <u>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u> <u>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u> 5. <u>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u> <u>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u> <u>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u> <u>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u> <u>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u> <u>니하다.</u> 가. <u>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u> <u>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u> <u>하지 아니하는 경우</u> 나. (생략) 다. <u>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u> <u>휴일에 개최하는 경우</u>	<u>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u> <u>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u> <삭 제> 5. ----- -----. ----- ----- ----- ----- ----- -----. 가. ----- ----- <u>업무를 방해할 우려</u> <u>가 없는</u>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	--